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502호
-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 라.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축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제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축제의 경우 공익성보다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익 추구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며,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명확히 하되, 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나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축제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정함(안 제16조제2항)
- 나. 공익성 훼손 우려가 있거나 사익 추구 목적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 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자의성 논란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

- 서울특별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3조1)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축제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년 공모 지침 변경에 따라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단체의 경우, 지원 요건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집행의 자의성 논란을 예방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연속성과 지원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축제의 지원·육성 규정과 관련하여, 축제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1)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1. 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이에 따라, 축제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로 한정하고,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되는 경우 및 「소득세법」 제2조제3항2)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축제 지원이라는 보조금 사업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⁴⁾와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므로, 축제

2)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역시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5)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조직적 기반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축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문화 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는 기준은 동 조례의 목적과 축제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해석이 자의적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3502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형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정함 (안 제16조제2항) ○ 공익성 훼손 우려가 있거나 사익 추구 목적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추진경과	○ '26.2.9.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 축제 지원 사업 수행 시,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 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나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지원이 제한되는 단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윤영은(☎2133-2569)	담당	정유진(☎2133-2570)